

겸재정선미술관 3층 다목적실 전시 대관 규정

26.05.03.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겸재정선미술관(이하 ‘미술관’)이 3층 다목적실을 전시목적으로 대관할 시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상호 준수해야 하는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시 대관”이란 3층 다목적실을 전시목적으로 대관하여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되는 전시품을 관람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부대행사”란 개막식, 강연, 촬영, 체험행사 등 전시 대관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대관자”란 본 미술관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대관장소”란 미술관 3층 다목적실을 말한다.
5. “대관기간”이란 설치, 운영, 철수를 포함한 전체 사용기간을 말한다.
6. “전시물”이란 작품 및 전시와 관련하여 설치되는 모든 물품을 말한다.

제3조 대관절차

1. 대관 접수 기간에 전시계획서(전시명, 작가노트, 작가프로필, 전시 희망 일자, 전시작품 이미지를 포함한 포트폴리오)를 첨부하여 제출처에 ppt 10장 내외 혹은 PDF file형식으로 제출한다.
2. 계획서는 내부 심의를 거쳐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보한다.
3. 결과를 통보받은 뒤 최종적으로 대관기간을 협의한 뒤 대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4. 이후 미술관에서 요청하는 계약서, 서약서, 작품 인수인계서에 날인하여 제출한다.
5. 대관종료 후 대관료를 납부한다.

제4조 다목적실 휴무 및 대관 사용시간

1. 다목적실의 휴무는 매주 월요일이다.
2. 다목적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전시 설치, 전시 철수 시 : 오전 9시 30분 부터 오후 17시 30분까지
 - ② 전시 운영 시 : 오전 10시부터 오후 17시 50분까지※ 대관자는 미술관 운영 및 안전, 보안을 위하여 17:50분까지 운영을 종료한다.
3. 대관자는 사용시간 및 대관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승인된 사용시간 외 추가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미준수시 미술관에서 즉시 시정요구 및 전시 중단, 향후 대관 제한을 할 수 있다.

제5조 대관료

1. 대관료는 1일 13만원이다.
2. 전시 설치, 철수일까지 대관기간, 대여일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월요일은 휴관일이므로 대여일수에서 제외한다.

구분	면적	대관료 (1일, vat 포함)	비고
미술관 3층 다목적실	192㎡ (약50평)	130,000원	- 전시 설치, 철수일 일수 계산에 포함 - 월요일 휴관 제외

제6조 공간운영·안전 준수 의무

1. “미술관”은 “대관” 시설 및 설비의 유지·관리, “전시 대관”의 입장 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승인과 거부의 권한을 가진다.
2. “대관자”는 “대관” 계약 체결시 「검재정선미술관 3층 다목적실 전시 대관 규정」(이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3. “규정”은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다.
4. “규정”변경을 사유로 “대관자”는 “대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제7조 대관 범위

1. 전시 대관 공간은 3층 다목적실 내부로 한정한다.
2. 복도, 계단, 로비, 카페 공간 등 공용공간은 별도 승인 없이 사용 불가하다.
3. 설치, 철수 업체 선정 및 관련 사항은 “대관자”가 직접 하여야 하며 미술관 인력은 지원할 수 없다.

제8조 설치 및 철수 유의사항

1. 설치 및 철수는 지정된 시간 내 완료하여야 한다.
2. 전시 설치는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3. 다음 행위를 금지한다.
 - ① 천장 구조물(천장면 등)에 설치·고정하는 행위
 - ② 벽면 훼손(강력 접착제 사용 등)
 - ③ 설치 가능 공간 무단 확장
4. 전기 사용 및 특수 설치에 반드시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진행한다.
5. 작품 설치 시 전시작품명을 포함한 작품 인수인계증 2부를 구비하여, 미술관과 1부씩 나누어 소지한다.
6. 전시 대관 종료 후 전시물 및 폐기물은 전량 회수하고, 발생 폐기물은 대관자가 처리하여야 하며, 전시장의 원래모습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7. 시설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책임을 진다.

제9조 대관 전시 운영 기준

1. 전시 대관 내용은 사전 승인된 계획서와 동일해야 한다.
2. 대관 기간 동안 대관장소 내부에는 전시 지킴이 최소 1명 이상을 상주하게 하여 전시 작품 보안 및 관람객 응대를 하게 한다.(대관 기간 동안 분실 작품에 대해 미술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다음 행위를 금지한다.

- ① 소음 발생 행위(확성기, 공연 등)
 - ② 관람객 동선 방해
 - ③ 안전사고 우려 행위
4. 상업적 판매 행위는 금지한다.
5. 겸재정선미술관은 유물·작품이 안전하게 보존되고, 관람객이 편안하게 전시를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립미술관임을 숙지하고, 이에 위배되는 행동은 금한다.

제10조 개막식 및 행사 운영

- 1. 개막식 등 별도 행사를 진행할 경우
 - ① 행사 계획(일시, 내용, 규모)을 사전에 대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받아야 한다.
(미술관 내부행사와 일시가 겹칠 경우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테이블, 의자를 요청할 경우 사전에 대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 2. 승인되지 않은 행사는 진행할 수 없다.

제11조 홍보물 관련 유의사항

- 1. 전시물, 배너, 안내판, 홍보물 등은 사전 승인된 위치 외 설치를 금지한다.
 - 미술관 내 게시판 3부 출력 후 부착 가능(A3사이즈)
- 2. 미술관 외부 및 공용공간에 홍보물의 무단 설치를 금지한다.
- 3. 전시 종료 후 홍보물은 전량 철거하여야 한다.
- 4. 전시 홍보물에는 반드시 '3층 다목적실 대관 전시'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ex) 초대전, 기획전, 기획전시실 등 사용불가
- 5. "대관자"는 반드시 홍보물 인쇄 및 배포 이전에 시안을 대관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 안전 및 책임

- 1. 대관자는 전시 운영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 2. 화재 예방을 위하여 인화성 물질 반입을 금지한다.

제13조 준수사항 위반 시 제재

- 1. 다음 사항 위반 시 미술관은 즉시 현장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 ① 시간 미준수
 - ② 무단 설치 및 시설 훼손
 - ③ 승인되지 않은 행사 진행

* 조치 단계 : 현장 시정 요구 → 전시 중단 및 향후 대관 제한
- 2. 아래의 경우, 현장 시정 요구 없이 바로 대관 승인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① 대관 기간 중 다목적실 혹은 공용공간에서 음식물 반입 및 섭취를 하는 경우
 - ② 대관 기간 중 다목적실 내부와 복도에 화환, 화분 등을 반입하는 경우
 - ③ 홍보물에 '3층 다목적실 대관 전시'임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관람객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
 - ④ 공간을 무단으로 확장하여 사용한 경우
 - ⑤ 미술관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대관종료일 이후에도 원상복구에 상당한 시

간 또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⑥ 관람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
- ⑦ 예술성이 결여되었거나 예술 외적인 목적이 주된 일반 행사인 경우
- ⑧ 대관 신청 당시에 제출한 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 ⑨ 대관 계약을 제3자에게 전대, 전매, 양도, 이전한 경우
- ⑩ 내용 변경 신청한 내용이 대관 신청 당시 계획서와 현저히 달라 동일한 전시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제14조 기타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미술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대관자는 본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